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# 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
-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2조에서 제1호로 구분되어 있던 조문을 정비(안 제2조)
-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, “육성계획”을 “중장기 계획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2020년 11월 6일 제정된 조례로,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

위해 마련된 것임.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 중복되는 용어를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- 또한, 도지사의 시책과 사업 중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계획을 ‘중장기 육성계획’으로 변경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, 이러한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